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시설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본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자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이용계약】

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①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③ 이용자의 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등 각 1부
 - ④ 기타 공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필요한 서류 등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
 -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④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2항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보며, 갱신일로부터 다시 재계약 시작일로 둔다. 단, 계약의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항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경감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②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③ 주간보호시설 점심식대(간식비포함)비용은 비급여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 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경감비율에 따름

제5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항 【계약의 정지】 제47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